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 교육생 신청 업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전문기술교육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업력 보유 소상공인, 튼튼창업은 창업예정자 및 초기창업 소상공인 참여 가능합니다.

- ☞ 전문기술교육 : 교육 신청부터 교육비 지원 시점까지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하며, 휴·폐업 중인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 ☞ 튼튼창업 : 창업예정자의 경우 최초 1회 교육 수료일 기준 60일 이내, 초기창업 소상공인은 공고일('20. 6. 5.) 기준 업력 1년 미만인 자에 해당

Q2. 튼튼창업의 경우 ①창업예정자와 ②초기창업 소상공인의 각각 기준 무엇인가요?

A. ①창업예정자의 경우 최초 교육 수료일 기준 60일 이내 창업 예정자이며, ②초기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공고일 기준 업력이 1년 미만인 자에 해당합니다.

- ☞ 초기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교육생 모집 공고일이 2020. 6. 5. 이므로 2019. 6. 6. 이후 창업자부터 지원 가능

Q3.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에 참여할 수 없는 업종이 있나요?

A.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문기술교육사업 참여 불가
 - * 교육생 모집공고 내 [참고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

Q4.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을 수강하는 소상공인 업종·업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항목 기준을 준합니다.

-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의 항목명이 서류상(사업자등록증) 확인이 되어야 하며 기타 실제 운영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통계청, 제10차) : <https://kssc.kostat.go.kr:8443>

< 검색을 통한 분류코드 확인 >



< KSIC 연계표를 통한 분류코드 항목 확인 >

KSIC-10		연계	세부설명
코드	항목명		
56142	이동 음식점업	1	이동식 커피 판매점 제외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2	커피 전문점 제외, 이동식 커피 판매점 포함
56191	제과점업	1	아이스크림 전문점 제외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2	아이스크림 전문점 포함, 포장 판매 위주 기타 간이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	
56193	치킨 전문점	1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2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세분, 만두류 등 전문점 포함
56112	한식 면요리 전문점	2	한식 면요리 전문점 세분, 면류 전문점 등 포함
56113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2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세분, 꼬치류 전문점 등 포함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2	아이스크림 전문점 포함, 포장 판매 위주 기타 간이
56199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	포장판매 기타 간이 음식점 포함
56199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	포장판매 기타 간이 음식점 포함

* 연계표 확인 경로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_한국표준산업분류_자료실_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연계표

< 예 시 >

- 교육과정 : 케이크 디자인 ⇨ 케이크·빵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허용
- 교육과정 : 불고기 양념 비법 전수 ⇨ 적용 가능한 모든 음식업종 허용
- 교육과정 : 요리케이터러 ⇨ 적용 가능한 모든 음식업종 허용
- 교육과정 : 3D프린터 관련 ⇨ 제조업-3D프린터를 보유하여 운영가능한 소상공인(O)
- 교육과정 : 미용 관련 ⇨ 적용 가능한 모든 미용업 허용(단, 사업에 적용·운영 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 허용)

※ 인·허가 사업의 경우 필요시 증빙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Q5. 고유번호증 소지자가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을 신청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 ☞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해석
- ☞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으로 해당 서류로는 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불가능(고유번호증 보유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 제외)

Q6. 미성년자가 전문기술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면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Q7. 예비창업자인 미성년자가 튼튼창업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 창업예정자의 경우 최초 1회 교육 수료일 기준 6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 가능

Q8.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에 전통시장 상인도 신청 · 수강 가능한가요?

A.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면 가능

Q9.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에서 수강하고 싶은 교육과정과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 사업에서 수강한 교육과정이 중복일 때 수강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에서 수강예정인(또는 수강한) 교육과정과 타 기관에 등록·운영되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신청·수강 할 수 없습니다.

- ☞ 단, 교육기관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타 기관에 등록 · 운영 중이어도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등록하여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으로 운영 가능

Q10.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Q11. 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대표가 타 교육기관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만 가능하며, 업종관련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Q12.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초기창업자)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외 직원이나 가족도 교육수강을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초기창업자)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에 한해 교육 신청·수강이 가능하며, 본인 외 타인이 교육 신청·수강 시 제재조치 대상

Q13. 부동산 관리업, 자문 및 중개업 관련 창업예정자의 경우 전문기술교육(블로그마케팅) 과정을 수강해도 되는지?

A. 창업예정자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튼튼창업 : 초기창업자의 경우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력을 가지면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 29일의 업력을 가진 초기창업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부동산 관리업, 자문 및 중개업 관련만 해당)

☞ 전문기술 :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관리업, 자문 및 중개업 관련만 해당)

Q14. 부동산 관리업, 자문 및 중개업도 교육대상에 해당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업, 부동산컨설팅 서비스업은 교육대상에서 제외

Q15. 교육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 대표가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교육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강사, 직원 등 교육기관 관계자)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 임의 교육과정 개설 후 교육비 편취 등 보조금 부정 수령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수립한 교육과정의 해당 기관 대표자 및 관계자의 교육수강 제한

Q16.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 수강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 대표자 각각 소상공인 포털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Q17. 반드시 1개 과정 수수료 후에 2회차 교육을 신청해야 하나요?

A.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교육 일정이 겹치지 않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 교육생 1인당 연 2회 교육비 지원, 1회당 학원비의 90%(50만원 한도) 지원이며, 초과 시 자부담 100%

Q18. 교육생 선정 후 교육과정이 폐강처리 될 시 수강신청이 별도로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폐강처리 될 시, 다음 수강신청 기간에 재수강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Q19.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 동일과정을 수강해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 교육과정에 대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과정의 기준은 과정명 및 세부 커리큘럼으로 함

Q20.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초기창업자) 수강 중 휴·폐업할 경우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불가합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초기창업자)은 사업자 상태가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

Q21. 교육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교육생 모집 공고 [붙임6] 교습비 등 반환기준 참고

Q22. 제로페이 결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 하시면 됩니다.

Q23.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의 현금화 방지를 위함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또는 전부 환수 될 수 있음

Q24.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 교육비는 언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하나요?

A. 교육시작 전까지 결제 완료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 교육과정 교육생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교육시작 전 사이에 결제를 완료한 후 교육 참여 가능

☞ 법인·개인사업자 카드, 통장 등으로 결제 불가

☞ 교육기관은 영수증 발행에 있어 관련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

Q25.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비자용·사업자용 구분을 해야 하나요?

A. 소비자용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교육생 명의의 핸드폰번호로 발급 또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 후 카드번호로 발급(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영수증 인정 불가)

☞ 법인·개인사업자 카드, 통장 등으로 결제 불가

Q26.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교육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한 경우 출석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교육 미참석 시 사유불문하고 결석 처리합니다.

☞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도 출석 처리 불가(사유서 등은 무단결석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로만 활용되고 출석을 대신할 수 없음)

Q27.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과정 신청 시 e-러닝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하나요?

A. 필수로 들어야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e-러닝 교육을 듣도록 권고합니다.

Q28.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 수료 후 자금지원 대상에 해당되나요?

A.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문기술교육은 교육수료 후 자금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29.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의 교육수료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해야 인정됩니다.

☞ 교육기관은 출석부를 통해 교육생 출석을 교육일마다 확인하고, 교육종료 후 교육정보시스템에 수료 여부 입력

☞ 교육정보시스템에 수료 여부 처리가 완료되어야 교육생이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신청이 가능하므로 교육종료 후 조속히 수료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Q30. 교육과정 신청 후 폐강 또는 교육생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연간 지원 횟수가 차감이 되나요?

A. 교육과정 폐강 또는 교육생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31.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 교육 수료 이후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과정을 수강한 해당 학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전문기술교육, 튼튼창업 교육을 수강한 학원에서 수료증 발급 여부를 확인, 발급 가능 시 해당 학원 양식에 따라 확인 가능

Q32. 창업예정자(튼튼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최초 교육 수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창업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가 최대 한도(자부담10%)로 지원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자부담 100%(교육비 환급 불가)

Q33. 지식배움터 또는 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1644-5302로 문의바랍니다.

참고.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2019.4.18.기준)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 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표준산업분류	업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